

작업환경측정



실시목적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 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·평가한 후 시설·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

실시대상

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, 중금속, 소음, 분진, 고열, 금속가공류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

－ 단, 임시작업·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

- 벤젠, 톨루엔, 노말헥산, DMF, TCE,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 113종
- 구리, 납, 수은, 알루미늄, 주석, 산화철, 카드뮴 등 금속 23종
- 광물성분진, 곡물분진, 목분진, 먼분진, 용접흄 등 분진 6종
- 질산, 초산, 수산화나트륨,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
- 염소, 암모니아, 아황산가스,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및 소음, 고열
- 금속가공류 1종
-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베릴륨 등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참조



실시방법

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



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



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 실시



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에 결과보고서 제출
*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는 지정측정기관이 전산자료로 제출



실시주기

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,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

- 과거 측정결과 및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주기가 바뀔 수 있음



실시 후 조치사항

-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에 제출
-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첨부
- 사업주는 측정·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측정·평가결과	조치하여야 할 사항
노출기준 미만	현재의 작업상태 유지
노출기준 초과	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

-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, 발암성물질 측정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
- 발암성물질

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알파-나프탈아민과 그 염, 크롬산 아연, 오로토폴리딘과 그 염, 디아니시딘과 그 염, 베릴륨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, 크롬광, 휘발성폴타르피치, 황화니켈, 염화비닐, 벤조트리클로리드, 석면, 1,3-부타디엔, 벤젠, 사염화탄소, 포름알데히드, 니켈 및 그 화합물(불용성 화합물), 안티몬 및 그 화합물(삼산화안티몬)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합물(6가크롬), 산화에틸렌



위반시 벌칙

-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

기타 유의사항

-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 인자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,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작업 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
-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.moel.go.kr)
－ 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→ 작업환경측정기관현황

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해
**작업환경측정 및
특수건강진단**을
실시해야 합니다.

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
'산업안전보건' 참조

특수건강진단

실시목적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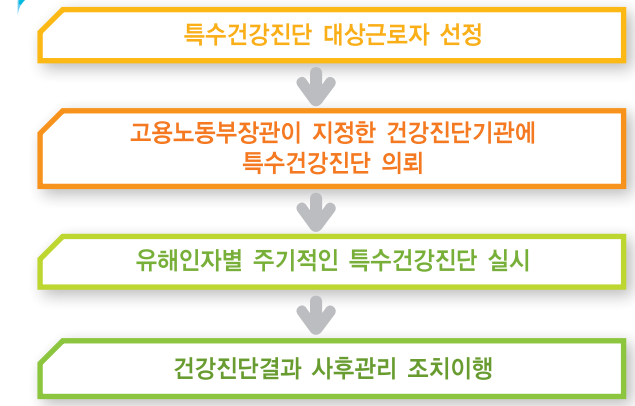
실시대상

-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, 소음,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-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,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
- 벤젠, 톨루엔, 노말헥산, DMF, TCE,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 화합물 108종
 - 구리, 납, 수은, 알루미늄, 주석, 산화철, 카드뮴 등 금속 19종
 - 광물성분진, 곡물분진, 목분진, 먼분진, 용접흄 등 분진 6종
 - 질산, 무수초산, 시안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
 - 염소, 아황산가스,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
 -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베릴륨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13종
 - 기타 소음 등 8종
- 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



실시방법



실시주기

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

* 자세한 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

실시 후 조치사항

-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
-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이행

구분	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
가	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
나	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착용,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)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
다	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)
라	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

-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서류를 5년간 보존, 발암성물질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
- 발암성물질

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알파-나프탈아민과 그 염, 크롬산 아연, 오로토틴리딘과 그 염, 디아니시딘과 그 염, 베릴륨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, 크롬광, 휘발성폴타르피치, 황화니켈, 염화비닐, 벤조트리클로리드, 석면, 1,3-부타디엔, 벤젠, 사염화탄소, 포름알데히드, 니켈 및 그 화합물(불용성 화합물), 안티몬 및 그 화합물(삼산화안티몬)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합물(6가크롬), 산화에틸렌

위반시 벌칙

-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 -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 -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: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(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- *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

기타 유의사항

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해야 하고,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

*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.moel.go.kr)
- 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→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

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연락처

서울청	02)2250-5773	부산북부지청	051)309-1557
서울강남지청	02)3465-8493	창원지청	055)239-6584
서울동부지청	02)2142-8873	울산지청	052)228-1885
서울서부지청	02)2077-6173	양산지청	055)370-0932
서울남부지청	02)2639-2276	진주시청	055)760-6562
서울북부지청	02)950-9824	통영지청	055)650-1944
서울관악지청	02)3282-9054	대구청	053)667-6371
중부청	032)460-4406	대구서부지청	053)605-9152
인천북부지청	032)540-7986	포항지청	054)271-6832
경기지청	031)259-0262	구미지청	054)450-3556
평택지청	031)646-1185	영주지청	054)639-1151
부천지청	032)714-8787	안동지청	054)851-8036
안양지청	031)463-7352	광주청	062)975-6338
안산지청	031)412-1978	전주시청	063)240-3393
의정부지청	031)850-7636	익산지청	063)839-0036
고양지청	031)931-2871	군산지청	063)450-0532
성남지청	031)788-1576	목포지청	061)280-0172
강원지청	033)258-3586	여수지청	061)650-0134
강릉지청	033)650-2522	광주청(제주)	064)728-6115
원주지청	033)769-0821	대전청	042)480-6302
태백지청	033)550-8622	청주시청	043)299-1316
영월출장소	033)371-6233	천안지청	041)560-2862
부산청	051)850-6475	충주시청	043)840-4035
부산동부지청	051)559-6642	보령지청	041)930-6146

작업환경측정·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10인 미만의 자율신청 사업장(특검은 건설일용직근로자 포함)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

- ➔ 신청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사업안내/신청 → 측정·특검 비용지원 → 신청서 작성)
- ➔ 문의전화: 032-510-0726